

의정정보

11

2015-11호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바로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 의정·입법칼럼

- 법률고문 강구태 변호사(법무법인 홍주 대표)
"도의회 자문위원 활동에 대한 단상(斷想)"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서울시의회 2016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등 5건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등 6건

■ 최근 기초의회 제·개정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 5건

■ 대법원 판례 정보

- 행정부작위위법 등 2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의정 · 입법 칼럼

- ▶ 법률고문 강구태 변호사(법무법인 홍주 대표)
“도의회 자문위원 활동에 대한 단상(斷想)” (5)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 충남도의회 안전한 충남 건설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8)
- ▶ 서울시의회 2016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10)
- ▶ 경기도의회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토론회 개최 (12)
- ▶ 전남도의회 UN제5사무국 한국유치 업무협약 체결 (13)
- ▶ 경남도의회 경남학연구회 ‘일제강점기 조선의열단 활동상 재조명’ 세미나 개최 (14)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 ▶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17)
-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0)
- ▶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1)
- ▶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 (24)
- ▶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26)
-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9)





최근 기초의회 제 · 개정 조례

- ▶ 광주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33)
- ▶ 강원도 고성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35)
- ▶ 전라북도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39)
- ▶ 경상남도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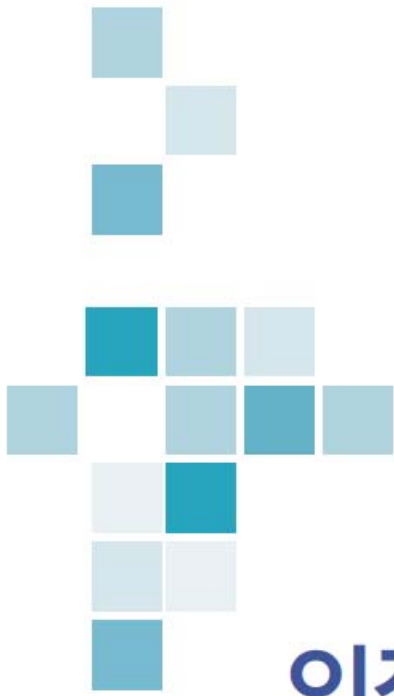
최근 제 · 개정 법령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45)
- ▶ 유통산업발전법 (46)
- ▶ 도로법 (48)
- ▶ 전기사업법 (49)
- ▶ 수산자원관리법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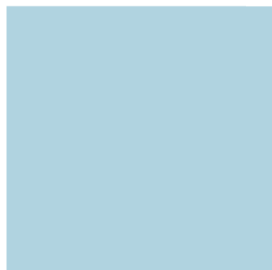
대법원 판례 정보

- ▶ 행정부작위위법 [공2015하,1502] (52)
- ▶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공2015하,1509] (54)





의정 · 입법칼럼



도의회 자문위원 활동에 대한 단상[斷想]

< 법률고문 강구태 변호사 / 법무법인 홍주 대표 >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가 충청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내포신도시로 옮긴 지가 거의 3년이 다 되어간다.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로 옮기면서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내포신도시에는 경제, 문화, 교육 등 부분에 있어 양적, 질적 성장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그 변화의 속도가 피부적으로 와 닿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홍성지역에서 20여년 이상을 변호사로 활동해온 나에게는 충남도의회 법률자문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내포신도시로의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 이전이 실감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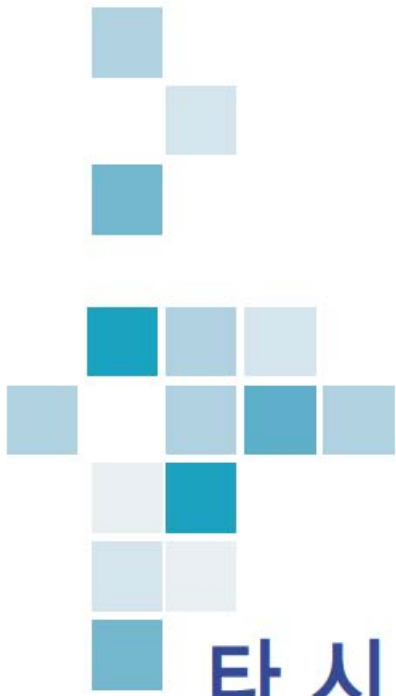
도의회는 법률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가끔씩 문의해오는 도의회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법적인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나름대로의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도정에 일부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평소 소송을 맡아 진행해오던 문제들과는 차원이 다른 여러 곳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관련 기관 내지는 단체 또는 개인들에게 그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도의회 질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의견 내지 해결책을 제시하여 도의회가 원활한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나는 도의회에서 질의 또는 문의해오는 문제에 대하여 나 나름대로 정한 원칙을 충실히 지켜 백퍼센트의 완벽한 답안 내지 해결책은 아니어도, 도의회에서 문제들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하고, 이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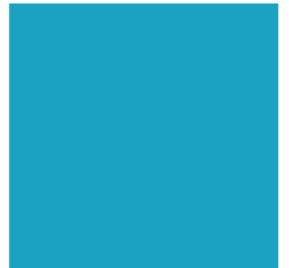
내가 정한 원칙이란, 첫째로 도의회에서 그와 같은 질의 또는 문의를 하게 된 이유와 동기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파악하여야 하겠고, 둘째로 질의 또는 문의사항의 성격을 파악하여 입법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도의회의 운영 및 활동과정에서의 문제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문제의 성격에 따라 자문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겠고, 셋째로 본인의 답변으로 인하여 도의회에서 질의 또는 문의사항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위와 같이 나 나름대로 정한 원칙을 지켜 자문 또는 답변을 하다 보면 도의회에서의 입법 및 운영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도의회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출신지역의 대표도 되지만 도대표라는 점을 인식하여 충남 도 전체의 발전과 충남도민의 복리증진과 번영을 위한 정책적인 개발과 활동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나도 도의회 법률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도의회가 구현하려는 목표 달성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안전한 충남 건설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내 16층 이상 공동주택이 최근 5년 사이 48% 이상 늘어나면서 고층 건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재 진압 장비가 건물의 고층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헬기 역시 건물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안전 충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토론회는 충남의 안전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향후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병욱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날 ‘충남의 안전실태와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과 은종화 충남대 국방연구위원, 유대준 도립대 교수, 김영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전 실장이 발표한 충남 안전실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총 1118동이다. 이는 2010년 754동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48% 늘어난 수치다. 반면 도로확장, 아파트 건립, 건물 증가, 각종 포장 등으로 배수 및 투수면적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역시 34만5000여명으로(16.5%)으로,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비율은 2030년 26.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전 실장은 내다봤다.

전 실장은 “도민 안전인식도 조사(통계청)를 보더라도 도민들이 각종 재난과 전염병 등에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회 안전에 57% 이상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안전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재난안전 대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구축된 만큼 취약분야 안전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식 제고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난 유형별 역할을 정립하고, 분산된 안전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통합적 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화 위원장은 “충남은 해안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된 데다, 농기계 전복사고, 자살률 등이 전국 상위권”이라며 “이들 사고는 안전에 대한 불신감을 팽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며 “도와 의회 그리고 민간이 모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층 건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점에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황을 연출한 훈련과 대응력을 갖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의장은 “이번 의정토론회를 통해 주변 재난 위험요소 안전 조치와 안전교육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도의회는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기로 했다.

-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 2016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는 2015년11월28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인 서울폴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2016회계연도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입장에서 서울시장이 지난11월10일 시의회에 제출한 27조 4,531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당해 연도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 편성의 방향 및 타당성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열띤 토론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토론회 진행은 예산 총론·여성, 문화·환경, 도시안전건설·교통, 복지·교육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진행 하였다. 각 세션별 시민단체의 발제에 대하여 전문가와 시의원, 공무원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분야별 예산투입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세션 좌장을 맡은 오봉수 시의원(금천 1)은 총론과 여성분야 토론을 진행하였다.

총론분야 발제자 손종필 서울폴시넷 시정모니터링위원장은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기능 및 문제점과, 시행4년차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한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총론분야 첫 번째 토론자인 김광수 시의원(도봉2)은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대간 지역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사전절차 이행의 중요성, 근거와 원칙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그간 토론회에서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된점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량예산 확보 차원에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여성분야 발제자인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16년 예산서와 성인지예산 설명자료 만으로는 여성관련 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지만 가족구조의 변화, 돌봄의 공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격차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평등효과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여성분야 첫 번째 토론자이신 이숙자 시의원(서초2)은 성인지 예산이 다소 형식적이고 양성평등 보다는 가족과 보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정책적 인식의 전환과 여성경제인 관련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돌봄과 가족을 중심으로 보육예산이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정전반에 걸친 성 주류화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여성에 대한 정책대응이 미흡하여 안전교육 및 재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1세션 좌장을 맡으신 오봉수의원은 발제자와 토론자 토론내용을 정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다양한 사항들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마무리 발언 했다.

- 미세먼지와 악취해결을 위한 -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규창의원(새누리당, 여주2)은 11월 4일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미세먼지와 악취해결을 위한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가 생활주변 대기질 악화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다.

김규창 의원은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에 대한 추진배경, 서울시 사례, 환경부의 추진동향과 조례안 주요내용, 투자재원 예측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생물성연소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관리에 대한 주제로는 경기연구원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이 발표 하였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직화구이 업소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의 선행과 대형업소에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유인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있는 논의를 하였다.

아울러, 김규창 의원은 “우리주변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적인 규제시설은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지만, 현재 직화구이 음식점 등과 같은 비규제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과 업소들의 협력을 통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안이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전남도의회

UN제5사무국 한국유치 업무협약 체결

전남도의회(의장 명현관)는 12일 도의회 의장회의실에서 UN제5사무국유치국민연합(공동대표 서쌍원, 이영태)과 ‘UN제5사무국 한국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남도의회와 UN제5사무국유치국민연합은 신의를 바탕으로 사무국의 한국유치를 위해 홍보와 국민 동참을 유도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과 내용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명현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 등 UN사무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쌍원 대표는 “우리나라에 사무국이 유치되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은 물론이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전남도의회에서도 사무국 유치를 위해 많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학연구회 ‘일제강점기 조선의열단 활동상 재조명’ 세미나 개최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남학연구회(회장 박삼동 의원)는 10월 29일(목)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밀양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열단 재조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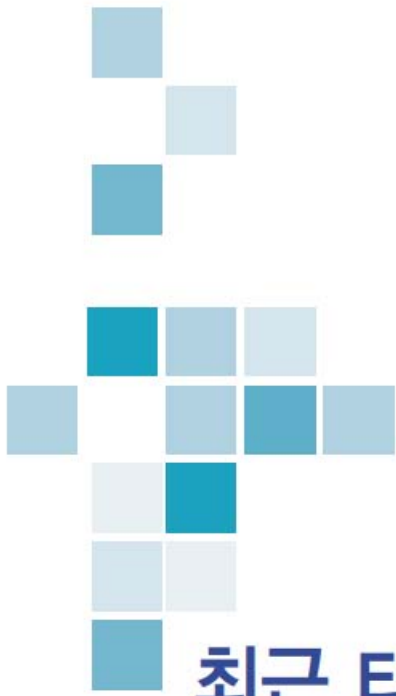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는 경남학연구회에서 지난 2014년 12월 1일 “제2의 유관순, 조수옥 여사”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한 후 그 두번째 행사로서 밀양 출신 김원봉열사를 단장으로 한 조선의열단의 활동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경남학연구회 회원들과 밀양향토청년회(회장 김병휘)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강점기 기간동안 대한 독립을 위해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조선의열단의 활약상을 재조명하고 그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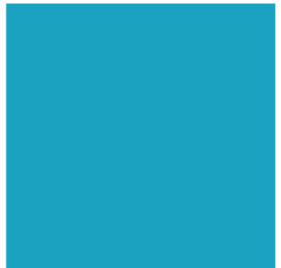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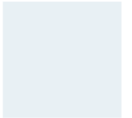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김 승 교수의 “일제강점기 조선의열단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경남대학교 송성안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경상남도의회 이병희 부의장, 경남신문 이슬기 기자, 밀양독립운동사연구소 최필숙 연구위원, 밀양향토청년회 김병휘 회장이 조선의열단의 활동상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박삼동 경상남도의회 경남학연구회 회장은 “경상남도의회 연구단체인 경남학연구회에서는 “경남을 빛낸 인물을 찾아서” 행사를 작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조선의열단 재조명 세미나는 특히, 밀양시와 밀양시의회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 경남을 빛낸 인물을 널리 찾아서 알리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시행 2015.11.5.] [울산광역시조례 제1561호, 2015.11.5., 제정]

□ 주요목적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범죄, 손상을 예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안전사고”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산업안전, 원전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가정안전, 청소년 및 노인안전 사고 등으로 구분한다.
3. “범죄”는 실질적 및 형식적 범죄로 구분되며 공익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4. “손상”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5.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안전불감증 해소 등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5년마

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도시 구현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4.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관련 및 업무
6. 추진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설정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7. 안전 관련 시설 설치·운영, 설비개선 지원, 물품 보급 및 장려에 관한 사항
8.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포상)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관련 교육기관, 의료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및 재난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790호, 2015.11.10., 제정]

□ 주요목적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봉사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3.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4. 수험생 등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 봉사
5.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에 위한 사업
6. 교통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건의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포상) 시장은 시의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단체나 구성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4.] [경기도조례 제5059호, 2015.11.4., 제정]

□ 주요목적

「문화예술진흥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를 보존·관리 및 육성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전통문화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에 관한 분야

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제5조(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및 지원대상)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발전·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6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람 편의시설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
2. 관련 전시·박물관 건립 사업
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전통문화의 교육 및 보급)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실시
2. 전통문화의 역사·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한 문화강좌 실시
3. 학교 및 직장 내 학생·직원 등의 정서와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단체 활동 권장 및 지원
4.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보존위원회 구성) ① 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종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으로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청 할 경우

제11조(보존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소관 담당팀장이 된다.

④ 보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보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준용) 보존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 2015.11.6.] [강원도조례 제3940호, 2015.11.6., 제정]

□ 주요목적

강원도 소재 농업용 양수장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양수장”이란 양수장비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써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2. “전기사용료”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시설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요금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별 양수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전기사용료 지원대상은 강원도 내 소재하고 있는 공공목적(개인 양수장 제외)의 “농업용 양수장”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매년 전기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전기사용료 지원신청은 해당 양수장 소재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일괄 신청하도록 한다.

- ② 지원신청은 매년 12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전기사용료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금액 등을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은 전기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을 최종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대상에 대하여는 그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시행 2015.11.16.] [전라남도조례 제3971호, 2015.11.16., 제정]

□ 주요목적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영 제2조제3호라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옥외 체육공간의 조명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장식조명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장식조명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조명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도민 및 조명기구 설치·관리자는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부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은 전라남도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인공조명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변경
3.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6.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철새 도래지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 및 장소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

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 및 권고) 도지사는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468호, 2015.11.18., 제정]

□ 주요목적

도민에게 다양한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도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4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자기주도 학습개선을 위해 제3조에 따라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학습에 필요한 스스로의 능력치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수행함으로써 스스로의 학습능력을 강화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과 학습전략 그리고 개인의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지성과 인성 및 적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 발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행정시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진로, 적성 및 인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배치
4.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5.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7.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대상) ①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 교사로 한다.

② 도지사는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라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시설사용 등) ①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④ 도지사는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3.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



습행사 단체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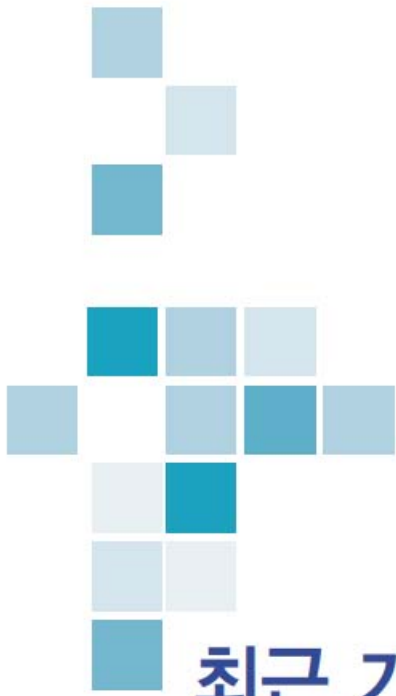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제10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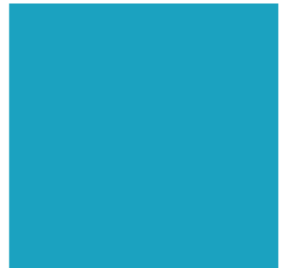
② 도지사는 필요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현안 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기초의회 제·개정 조례



1. 광주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시행 2015.11.9.]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875호, 2015.11.9., 제정]

□ 주요목적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고성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시행 2015.11.5.]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248호, 2015.11.5., 제정]

□ 주요목적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고성군수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감사대상) 감사 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3조(감사범위) ① 감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5조 및 「주택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범위
4.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반의 구성) ① 군수는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업무부서 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 업무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을 감사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 등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 · 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대상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 처리) 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0.]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210호, 2015.11.20., 제정]

□ 주요목적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가치가 있는 고창군의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3조(세계유산의 등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서남해안갯벌의 우수한 자연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군수는 문화재청장·전라북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서남해안갯벌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잠정목록에 등재된 서남해안갯벌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고창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대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

에 관한 심의

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

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교육 활동

5. 그 밖에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고창군 문화재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

4.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문화재청장과 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7. 그 밖에 문화재·행정·교육·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한 세계유산등재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전라북도지사 및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사무국 포함)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세계유산등재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을 지원·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경비보조 및 출연 등) ① 군수는 서남해안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있어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운영과 연구사업, 등재신청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창군 서남해안갯벌의 탁월한 자연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자연유산 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공과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4.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1.]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149호, 2015.11.11., 제정]

□ 주요목적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시장이 현지실사 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2회 지정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기준
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 종사자 친절도 기준
4.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신청 및 추천,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 설치
- 2. 폐기물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3. 상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 5.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제도 등의 안내
-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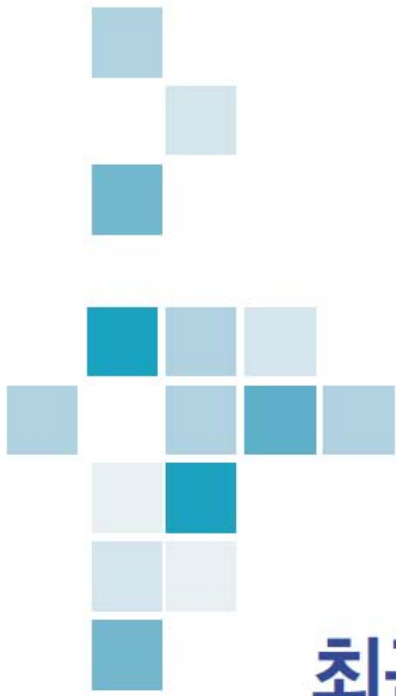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촉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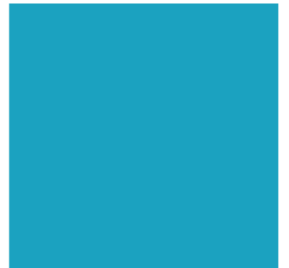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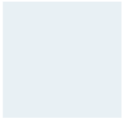
-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조사
-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01호, 2015.5.18.,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의 유지 및 국민 전체의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대수명의 연장, 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한국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들은 여가시간의 증가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미흡하고, 여가정보,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여가시간 대부분을 휴식과 같은 수동적, 소극적 활동으로 보내고 있어 자기계발이나 사회참여 등 생산적 여가 활동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사회의 일과 여가에 대한 균형 요구, 다양한 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여가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정보를 개발·수집·보급하며,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어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전체의 행복수준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5.11.20.] [법률 제13510호, 2015.11.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행위능력 결격 및 파산의 경력은 범죄행위 경력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며,

현행 물류설비 인증 제도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어 기업에는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폐지하는 대신 제품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게 되는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그 밖에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 등록의 과도한 제한 해소(제10조제1호 및 제5호)

1) 현행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이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실행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로서 과도하게 제재하는 문제가 있음.

2)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행위능력 결격 및 파산의 경력은 범죄행위 경력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나. 물류설비에 대한 인증제도 폐지(현행 제27조 및 제27조의2 삭제)

1) 현재 물류설비의 인증 제도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는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음.

2) 물류설비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다.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위임범위의 명확화(제29조제1항)

현행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면서 구체적인 범위 없이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부지면적, 시설면적,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을 지정요건으로 하여 위임하도록 함.

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관련 유효기간 연장(제48조의2)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함.

3. 도로법

[시행 2015.11.12.] [법률 제13478호, 2015.8.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의 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도로확장 등으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의무를 감면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함(제68조제4호의2 신설).
- 나. 도로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유지를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함(제68조제8호 신설).
- 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장비 설치 차로로의 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제78조제3항 신설 및 제115조제5호).

4. 전기사업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13호, 2015.5.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력계통의 운영 및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사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함.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발전설비계획과 송·변전설비계획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함(제25조 제6항제3호, 제25조제6항제5호 신설).

나.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2제5항).

다.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를 변경·말소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

라. 사업의 인·허가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을 추가함(제66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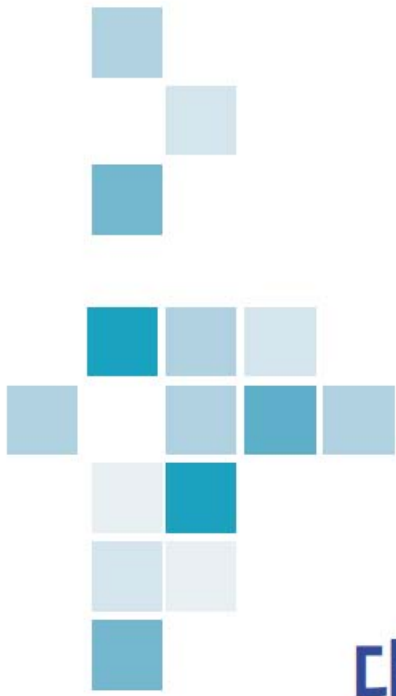
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15.11.12.] [법률 제13495호, 2015.8.11.,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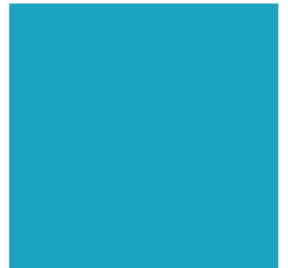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14. 11. 19.)에 따라 구 해양경찰청의 해양관련 수사권의 일부가 경찰청으로 이관되어 관련 단속·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불법어획물을 방류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으로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하는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으로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대법원 판례 정보





행정부작위위법 [공2015하,1502]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16746 판결

【판시사항】

-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의 의미와 범위
- [2]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의 주민소송 요건인 위법하게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등의 공금에 대한 부과·징수가 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민소송 제도는 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무회계에 관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호 등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 또는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를 말하고, 그 밖에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는 행위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또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는 재원 중 하나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의 효율적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는 등 그 부과·징수를 재무회계 관점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한다.
- [3]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의 주민소송 요건인 위법하게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제로서, 관련 법령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공금에 대한 부과·징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3]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공2015하,1509]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추517 판결

【판시사항】

- [1] 교육감의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신청 사무가 기관위임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 [2]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 [3] 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 사무를 집행하였는데 사후에 기관위임 국가사무임이 밝혀진 경우, 기존에 행한 사무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4] 감사대상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교육부장관이나 감사활동 수행자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감사를 거부한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5]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의무에 속한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특별한 사정’의 의미 및 교육감이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1]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인 장학관, 장학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신청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 [2]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각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학생이 시·도 상호 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사립학교 상호 간 전출하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반영되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이다.
-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사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사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이다.
- [3]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규정된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

에서 이를 자치사무라고 보아 사무를 집행하였는데, 사후에 사법절차에서 그 사무가 기관위임 국가사무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기존에 행한 사무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감사절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제171조의2, 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나 감사활동 수행자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징계대상자들이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감사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에게 이행할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는 요건은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데, 교육감은 의무에 속한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충족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능력이나 여건의 미비, 인력의 부족 등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뜻하고, 교육감이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 [2]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25조, 제47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 [3]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25조, 제47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제171조의2, 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 [1][2][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공2014상, 744)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공2014상, 739)
 [5]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공2013하, 1355)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5년 12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